

〈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(6차 연장) 주요내용 〉

1. 사용부담 완화 6차 연장 개요

- '23.12월말까지 연장되어 연말 종료예정이었던 국유재산 ①사용료율 경감, ②납부기한 연장, ③연체료 경감 지원기간을 '24.12월말까지 재연장

구 분	지원 내용	지원 기간			
		최초 시행	1차~4차 연장	5차 연장	6차 연장
사용료율 경감	■소상공인 : 재산가액의 3→1%	9개월 (20.4~12월)	6개월 연장 (~21.6월 → ~21.12월 → ~22.6월 → ~22.12월)	1년 연장 (~23.12월)	1년 연장 (~24.12월)
	■중소기업 : 재산가액의 5→3%	5개월 (20.8~12월)			
납부기한 연장	■모든 국유재산 사용자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(최장 6개월)	5개월 (20.8~12월)			
연체료 경감	■모든 국유재산 사용자 사용료 연체료율을 7~10→5%로 경감 연체기간 불산입	10개월 (20.3~12월)			

* 대기업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은 제외

2. 주요 사항 (기간 연장에 따른 주요 참고 사항)

- ① **[중·소상공인 사용료율 경감] '24.12월말까지 사용료율 경감 연장**
 - (감면 한도) 사용허가계약 기준 연 2천만원 한도
 - * 사용허가 받은 자 기준이 아닌 사용허가계약 기준이며, 연간 사용료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임을 유의(즉, '22년, '23년, '24년 각 2천만원 한도)
 - (중복·선택 적용 불가) 소상공인 경감 사용료율(1%)과 중소기업 경감 사용료율(3%)간 중복 및 선택 적용 불가
 - (신청 생략) 既 감면자는 증명서 잔여 유효기간 내에 한해 신청 생략 가능
- ② **[납부기한 연장] '24.12월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계속 시행**
 - (연장 기간) 3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
 - (적용 제외) ①이미 최대 기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받은 경우, ②신청일 기준 연체 진행 중인 경우의 사용료(채권)는 연장 불가
- ③ **[연체료 경감] '24.12월말까지 연체료 경감 연장, 연체기간 불산입**
- ④ **[공통]**
 - (제외 대상) 대기업, 지자체(지방공기업 포함) 및 공공기관은 사용료 경감, 납부기한 연장, 연체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
 - (신청 기한)

사용료 경감	납부기한 연장	연체료 경감
'24.12.31.까지	기존 납부기한까지	신청 불요
 - (환급 재원) 환급재원 부족 등 既 납부 사용료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, 가급적 수납과 동일 회계연도 내 환급 처리

< 국유재산 사용부담완화 담당자 안내 >

□ 경북선

- 대구, 경산, 영천 구간 : 강혜영 과장(☎ 051-664-5456)
- 청도, 밀양, 양산 구간 : 박성희 대리(☎ 051-664-5451)
- 부산 구간: 장승희 차장(☎ 051-664-5409)

□ 동해남부선

- 부산 구간 : 김지연 차장(☎ 051-664-5408)
- 기장, 울산 구간 : 주병규 과장(☎ 051-664-5455)
- 경주, 포항 구간 : 정성훈 차장(☎ 051-664-5406)
- 영덕 구간 : 김주란 사원(☎ 051-664-5407)

□ 경전선

- 김해, 창원 구간 : 권태석 사원(☎ 051-664-5410)
- 함안,진주, 사천, 하동 구간 : 김태완 차장(☎ 051-664-5460)